#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7

발의연월일: 2020. 7. 2.

발 의 자:이형석·홍익표·양기대

김남국 · 안규백 · 이수진

김영배 · 진성준 · 김경협

한병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인권교육의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의 운영 등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안 제1조, 제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조의2(기본이념) ①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기본 적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 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적으로 한다. 로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조의2(기본이념) ①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 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 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 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